

[별표 3]

# 이 전 료 정 액 표

(단위 : 원)

구분 등급	50 킬로미 터까지	100 킬로미 터까지	150 킬로미 터까지	200 킬로미 터까지	250 킬로미 터까지	300 킬로미 터까지	350 킬로미 터까지	400 킬로미 터까지	450 킬로미 터까지	500 킬로미 터까지
제 1 호 해당자	2, 650	3, 200	3, 740	4, 290	4, 830	5, 380	5, 920	6, 470	7, 010	7, 560
제 2 호 해당자	1, 900	2, 400	2, 810	3, 220	3, 630	4, 040	4, 450	4, 860	5, 270	5, 680
제 3 호 해당자	1, 990	2, 400	2, 810	3, 220	3, 630	4, 040	4, 450	4, 860	5, 270	5, 680
제 4 호 해당자	1, 660	2, 000	2, 340	2, 680	3, 020	3, 360	3, 700	4, 040	4, 380	4, 720

## 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 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군공중보건을위한장학금지급조례중 다  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2항중 “면허가 취소될때” 다음에 “또  
는 성실히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  
거나 본인이 희망할시”를 삽입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장학금의반납) ① (생 략) 1-2 (생 략) 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 이행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의료법 위 반 등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될때 에는 미이행 된 잔여기간에 해당 하는 장학금액을 제1항에 따라 반 납해야 한다.	제9조(장학금의반납) ① (현행과 같음) 1-2(현행과 같음) ②..... ..... 또는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 사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이 희망할시